
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['26~'28]

2026. 4. 6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3
III. 추진방향	6
IV. 세부 추진과제	7
V. 향후 추진계획	22

I. 추진배경

□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 주체로 부각

- 양극화 심화, 지방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,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 중요성 증대
 - 협동조합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역량 확보에 용이
 - * '협동조합'은 조합원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, 연대·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·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조직(국제협동조합연맹(ICA) 7대 기본원칙)
- 협동조합은 의료·돌봄 등 생활 필수서비스 공급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을 통해 '기본이 튼튼한 사회' 구현에 기여 가능
 - * 기본사회법(신정훈, '26.1) : 주거, 의료·돌봄 등 기본서비스 제공에 '협동조합' 등 활용
 - **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약계층 고용형 : ('13) 17 → ('25) 934개 지역사업형 : ('13) 40 → ('25) 3,816개
-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므로 지역의 핵심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, 생활 밀착영역에 탄력 대응 가능

□ 정부·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성장 강조

- UN·ILO 등 국제사회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를 '포용적 성장'과 '지속가능발전'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
 - * 유엔(UN) :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지정·선포('12년 첫 번째, '25년 두 번째)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('23년) 등
- 국민주권정부도 출범 이후 참여·연대·혁신 기반의 사회연대경제* 활성화를 추진하며,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
 - * 주요주체 : 협동조합(기획처), 사회적기업(고용부), 마을기업(행안부), 자활기업(복지부) 등
 - ※ (국정과제 81)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: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

👉 **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량 강화 필요**

【 참고1 】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그간 성과

1. 수립배경

□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정·시행('12.12.1.)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모델로 주목
 - * UN은 각국에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정비 권고('09년) 및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('12년)

- 우리나라는 '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, 기존 8개 개별법*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·활동 지원

* 농협법, 수협법, 업연초법, 산림조합법, 중기조합법, 신협법, 새마을금고법, 생협법

□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3년단위 법정 기본계획* 수립중

*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현재까지 '13년 이후 총 4회*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

* 1차('13.12), 2차('17.1), 3차('20.3), 4차('23.2)

2. 그간 1~4차 기본계획 주요성과 및 평가

- 1~3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의 운영상 편의를 위한 법·제도 정비 중심, 4차 기본계획은 교육·창업·판로 관련 정책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

구 분	주요 성과
1차 ('14~'1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합회 공제사업 허용('14), 공공기관 우선구매(사회적협동조합, '14) · 중소기업자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('14. 중소기업기본법 개정) · 타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허용('14),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허용('16)
2차 ('17~'1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기관 우선구매 내실화('17) :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시 실적배점 상향 · 경영진단을 위한 온라인 상담 운영('18)
3차 ('20~'2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('20) : 협동조합, 생협 및 신협이 회원으로 참여 · 우선출자 신설('20) : 비조합원이 출자 가능, 잉여금 배당의 우선적 지위
4차 ('23~'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 유튜브·브로슈어·상담 등을 활용한 설립 지원('23~) · 분야별 연합회 중심 맞춤형 교육(~'24), 농협·생협과 연계한 판로지원('23~)

- 다만, 4차 기본계획 중 부처·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연합회 기능강화,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 일부 과제수행 지연 → 재검토 후 제5차 기본계획 반영 추진

구 분	4차 기본계획 중 지연 과제 주요내용
부처·지역간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 유관부처 간 협력강화 · 시·도 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를 통한 중앙-지방 협력체계 강화
연합회 기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야별 연합회 중심 협동조합 설립·운영 및 맞춤형 교육 지원
부처 간 정보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세청,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공시시스템 연계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 현황

□ '25년말 기준, 협동조합 수는 3만개 이상, 분야·업종도 다양

- (설립 활성화) 협동조합은 기본법 제정('12) 이후, 매년 2천개 이상 지속 증가하여 '25.12월 기준 3만개 이상 설립

* 협동조합 설립 수(누적): ('13) 3,306 → ('25) 31,531개 (9배 ↑, 연평균 19% ↑)

- 유형, 분야·업종이 다양하게 성장중이며, 비수도권 비중도 확대

* 업종(%) : (도소매업) 16.3, (교육) 15.2, (사회복지) 12.5, (예술·스포츠) 9.1, (농어업) 8.2 등
지역별 비중(%), '13 → '25) : (수도권) 45.4 → 38.4 / (비수도권) 54.6 → 61.6

< 협동조합 설립 규모 >



* 출처: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(COOP)

<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>



* 출처: 제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

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내 긍정적 역할

- (고용창출) 협동조합 성장에 따라 종사업자 규모 지속 증가*,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강화

* 종사업자(만명) : ('14) 2.4 → ('16) 6.9 → ('20) 13.7 → ('22) 19.0 → ('24) 21.6
취약계층 고용(%) : ('14) 20.2 → ('16) 34.7 → ('20) 61.1 → ('22) 69.6 → ('24) 65.4

- (지역사회 기여) 지역기반 경제활동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(돌봄, 보건, 교육, 주거 등) 제공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

* 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(%) : ('15) 5 → ('25) 12.6, 10년간 2배 이상 증가

2 문제점

□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이 다수

-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운영률은 50% 수준*이며 자립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질적 성장 부족**

* 협동조합 규모(개, 제7차 실태조사) : [설립] '24년 26,539 [운영] '24년 14,285(53.8%)

** 평균 자산(억원) : ('22) 3.5 → ('24) 3.4, 평균 매출액(억원) : ('22) 3.7 → ('24) 3.2
평균 부채(억원) : ('22) 2.4 → ('24) 2.7, 평균 당기순이익(만원) : ('22) 118 → ('24) △1,180

□ 연합회 중심의 협동조합 간 연대·협력 미흡

- 연합회 가입률(약 20%), 연합회 규모(전체 중 0.5%) 등 연대·협력 활동이 낮은 수준이며,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구심점 역할 부족

* 연합회 설립개수(개) : ('21) 115(전체 대비 0.5%) → ('25) 153(0.4%)

□ 경영공시 지연 등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미비

- 일정요건(조합원 200명 또는 출자금 30억)의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경영공시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한내 미이행 사례 다수 발생*

* ('25) 경영공시 대상 5,362개소 중 지연공시 1,013개소(기한외 공시율 18.9%)

□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존재

- 협동조합의 신시장 진출을 저해*하거나, 타 개별법 협동조합 또는 타 법인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불합리한 법제도 존재

* (예)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정비 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 불가

□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, 공공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

- 지방정부(일협)-소관부처(사협)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고, 협동조합 정보보유 기관(국세청, 법원 등) 간 데이터 연계체계 미비*

* 국세청(사업자번호), 법원행정처(법인등록번호) 등 정보 연계시스템 미비

👉 **현존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,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**

【 참고2 】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·의견수렴 결과

1. 추진경과

- 제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추진('25.6 ~ '26.3월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
- 연구용역, 정책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
 - 협동조합 기본계획('25.5~'26.3월, 한국보건사회연구원) 관한 연구용역 추진
 - 사회연대경제 정책제안 토론회('25.10~11월) 참여
 - *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방향·세제개편 방안,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
- 의료·돌봄 등 분야·업종별 현장방문, 전문가 회의 등 현장의견 적극 수렴
 - * (예) 의료·돌봄, 주택, 에너지 등 분야·업계별 현장방문('25.5, '25.9 등)
업종협회별 간담회('26.1), 학계·경제계·법조계 전문가 간담회('26.1) 등
- 시·도 협의회('26.2)를 통해 각 시·도 협동조합 관리·운영실태 점검 및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건의과제 수렴

2. 주요 건의사항

- 분야·업종별 현장 전문가, 민간 전문가, 각 시도 등은 재정·자금조달 및 세제지원, 불합리한 규제개선,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과제 건의

구 분	주요 건의내용
재정	√ “현재는 개별 협동조합별로 교육, 판로 등 기능별 지원중이나, 설립 연령·규모 등에 따라 판로·인력·교육·컨설팅 등 맞춤형 종합 지원이 필요”
자금조달	√ “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자본의 30%인 우선출자 한도를 타 개별법상 협동조합 수준(50%)으로 확대 필요” √ “신협은 기본법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나, 신협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 지원 미비”
세제	√ “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성격·특성이 유사한 여타법인(사회적기업 등)에 준하는 혜택 적용 필요”
규제개선	√ “빈집정비,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으나, 관련 법제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어려움 존재”
운영 효율성	√ “시·도 등에서 협동조합 운영·정비·관리하기 위해 국세청(사업자번호), 법원행정처(법인등록번호) 등에 데이터를 요청해야 하는 등 관리 어려움” √ “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에 따라 총회 장소섭외, 조합원 참여독려 등 과도한 시간·비용이 발생”

Ⅲ. 추진방향

비전	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,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
전략	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'S.M.I.L.E' 5대 전략

현재 모습		⇒	미래 모습	
지표	'26년 기준		'28년	'30년
운영 협동조합 수	1.4만개	1.8만개	2만개 이상	
취업자 수	13.7만명	17만명	20만명 이상	
취약계층 고용률	65.4%	68%	70% 이상	

세부 추진과제

1	S cale up 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성장·도약 지원 ■ 자금조달 확대 ■ 사회적협동조합 활력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장단계별(진입·도약·고도화) 등 맞춤형 지원 확대 · 우선출자 한도 확대 · 신탁의 협동조합 등 출자 허용 ·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검토 ·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검토
2	M utual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합회 기능 강화 ■ 거점실행조직 기능 강화 ■ 사회연대조직 간 협력·연대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회 입회시 공증면제 추천 · 소속 조합 교육·관리 권한 부여 · 업종·지역별 거점실행조직 지정 및 중앙-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 · 사회연대경제 법·제도 마련 · 상호금융기관 대출·이차보전 확대
3	I dentity 정체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민주성 제고 ■ 경영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· 사전통지 안건 의결 원칙화 · 시·도의 경영공시 대상 사전안내 ·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 및 위반제재 조치 강화
4	L ocal 지역사회 참여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 ■ 시장진입·현장 규제 완화 ■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육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거, 친환경, 관광, 돌봄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· 빈집정비 농촌 빈집활용 민박 등 사업참여 ·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연계 인력 지원 · 농어촌 생활복지·정주여건 개선 등 필수서비스 제공 확대
5	E fficiency 운영 효율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설립·운영상 편의 제공 ■ 중앙-지방-현장 협력 거버넌스 강화 ■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회 원격영상회의 허용 · 변경신고 대상 항목 간소화 · 시·도협의회 연 1회 정례화 ·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 · 실태조사-기본계획 연계 강화 · 회계·재무 가이드라인 마련

IV. 세부 추진과제

1 ③ Scale up : 경쟁력 강화

- ◇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, 경영부담 완화 등 지원 강화
- ◇ 특히,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추진

① 성장·도약 지원

- (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) 기존 교육·판로 등 기능별 지원에서 성장단계별(진입·도약·고도화) 지원으로 전환 및 지원 확대 기획처

※ 협동조합 예산(억원) : ('17) 43 → ('20) 63 → ('23) 75 → ('24-25) 16 → ('26) 29

- (지원방향) 개별 조합에 특화된 지원 혹은 단기 매출지원보다 장기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지원 추진
- (지원체계) 협동조합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춘 연합회를 중심, 관계 전문가 그룹 형성*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

* 협동조합연합회 + 진입(선배 협동조합) / 도약(법률회계 전문가) / 고도화(사업실무투자 전문가)

<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(안) >

구분	현행	개편
방식	· 성장단계별 구분 無	· 진입·도약·고도화 성장단계별 대상 선정(공익성 고려) 및 각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
내용	· 교육지원, 판로확보 등 기능별 구분 지원 → 불특정 다수 집합교육, 1회성 매출 지원 등 일부 한계 존재	진입* (창업준비)
		도약 (5년미만)
		고도화 (5년이상)

* 향후 예산 반영 검토

- (기존 인프라 활용) 중기·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연계지원 강화^{중기부}
 - (창업) 창업보육센터*(BI)를 활용하여 협동조합 관련 초기 창업자 대상 업무공간·장비 및 경영·기술교육 지원^{중기부}
 - * 대학·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·운영하여 창업자 대상 사업공간, 기술·경영 멘토링 지원('25.12월 기준, 238개 센터 및 5,399개 기업 입주)
 - 중기부 창업사업 대상 공모시,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 협동조합, 우수 인증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우대 검토
 - (판로)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활용할 장비 도입, 신제품 기술개발, 공정개선 및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^{중기부}
 - (금융) 소진공 용자 정책자금 내 사회연대경제 전용트랙 신설 ('26년 200억원)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저리대출 지원^{중기부}
 - * (대출한도) 운전 1억원, 시설 5억원 / (기한) 운전 최대 5년, 시설 최대 8년
 - 지역신보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속 지원('26년 250억원 목표)
 - * 보증금액 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, 보증비율 최대 100%, 보증료율 0.5%
- (경영애로 지원) 경영위기를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상분류 기준 마련 및 대상선정·관리·점검·모니터링 등 체계적 지원^{기획처}

2 자금조달 확대

- (우선출자 확대) 조합원 차입 등 부채성 자금을 줄이고,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* 총액한도 확대(자기자본 30 → 50%)^{기획처/법개정}
 - * 우선출자 :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 선거권·의결권 미부여 現 납입출자금 총액(또는 우선출자금 제외 자기총자본)의 30% 초과할 수 없음
- (신협외 출자 허용) 신협의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(신용협동조합법 개정)^{금융위/법개정}

※ (현장의견) 신협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나, 협동조합 등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 지원 한계

③ 사회적협동조합 활력 제고

□ (지방세 특례)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 검토 행안부/법개정

□ (지역사랑상품권 사용)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액 기준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

*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(지침)

2 **M**utual : 상호간 협력·연대 강화

◇ 협동조합이 상호 협력·연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**연합회 기능 강화** 및 **거점실행조직 성장 촉진,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·연대 강화** 추진

① 연합회 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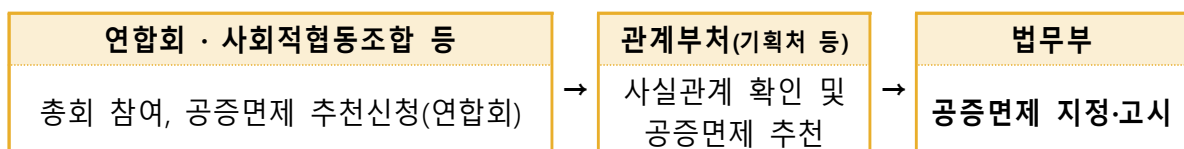
□ (공증부담 완화) 연합회 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제도 운영·도입을 통한 공증부담 완화 기획처

* 공증면제 요건 : ①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목적(사업)이 공익적, ②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

○ “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” 제도를 기획처 시범운영(~'27년) 및 성과 점검 후 전 부처로 확대 검토

○ 연합회 관계자가 총회 입회 가능토록 정관(규정 등)에 근거 마련 안내, 연합회의 회원조합 총회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제시

< 공증면제 추천 과정(안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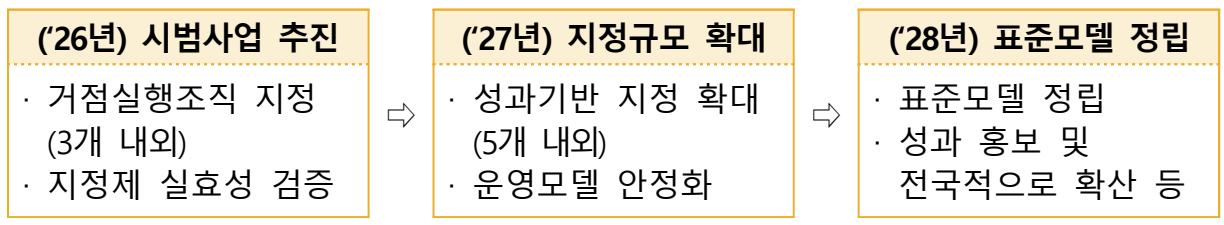
- (육성·교육기능 강화) 업종·지역별 연합회 중심으로 신규설립 희망 조합 육성,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·관리 특화 기능 부여 기획처
- (공제사업 활성화) 회원 조합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합회의 공제 사업 운영 활성화 검토 기획처
 - 공제사업 미운영 원인 분석, 관련 관리·감독기준 등 제도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6년) 및 공제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
 - 공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중앙공제회 설립 검토('28년~)

※ (참고) 현재 일정규모* 이상의 연합회(사회적·이종연합회 포함) 대상, 회원 간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 허용('14.1월) → 다만, 실제 운영사례는 全無
 * (근거)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0조의2
 (요건) 회원(조합)수 10인 이상 및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 모두 갖출 것

2 거점실행조직 기능 강화

- (거점실행조직 지정제) 업종별·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 선정 및 중앙-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·수행 지원 기획처
 - (대상) 업종별·지역별 연합회, 전국연합회 등 협동조합 조직화 역량과 행정 수행능력을 갖춘 조직을 중심으로 지정·자격 부여
 - (활동)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·지방정부 등과 사업 공동기획(Co-design) 및 실행 추진
 -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 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등 단계별 확산

< 거점실행조직 활성화(안) >



③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·연대 강화

□ (사회연대경제) 관련 법·제도 정비, 협업지원 등 인프라 강화 행안부·기획처

- (법제도 정비)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, 기본계획 수립, 공공 서비스 위탁 우대 등 법적기반 마련 행안부/법제정
- (거버넌스) 범정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협의체* 및 민간 자문단** 운영, 기본법 시행 후 위원회(중앙·지방) 설치

*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부처(기획처·노동부 등), 정책 관계부처(국토·농식품부 등) 참여

** 학계, 현장전문가 등 40명 내외 구성, 분야별(법제도, 사회연대금융 등) 전문역할(26.1.29.출범)

- (협업패키지 지원) 중앙-지방-현장(조합) 간 협력하여 돌봄, 주거,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과제 발굴시 지원 확대 기획처

* ('26) 10개팀 내외 / 최대 10백만원(팀 자부담 10% 포함)

※ (예시) 농촌 발달장애인의 돌봄·자립을 위해 중앙부처-지방정부-협동조합 간 일상돌봄, 방과 후 교육, 문화예술 활동지원, 일자리 연계방안 모색

□ (사회연대금융)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상호금융기관,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 확대 금융위·행안부

- (상호금융기관 지원) 새마을금고,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·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* 독려 금융위·행안부

* 이차보전을 위한 상호금융중앙회 내 '사회연대경제조직지원기금' 조성 독려

- (정책금융기관 지원)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*을 통한 자금공급 및 정책금융기관(신보 등)의 보증공급 확대 추진 금융위

*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대출

- ◇ 협동조합의 자주·자립·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,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 권익향상 등 민주성 제고 및 경영공시 내실화

①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민주성 제고

- **(조합원 참여강화) 조합원·감사에 ‘총회 소집요구권’ 및 ‘의안제안권’을 부여하여, 총회의 민주적 운영과 참여기능 강화** 기획처/법개정

- 현재 이사장(회) 중심의 ‘총회 소집요구권’을 조합원 및 감사 (예: 감사결과 부정사실 보고시)에게도 부여 기획처

- * (現) 기본법 상 ‘총회 소집권’은 이사장에 부여
- (改) 조합원(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시) · 감사에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

※ (참고) 총회와 관련된 분쟁 예방을 위해 정관예시를 통해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현장 적용의 불안정성 해소

- 조합원에 ‘총회 의안 제안권’을 부여하여 이사장(회) 견제 강화 기획처

- * (現) 기본법 상 총회 의안제안권은 이사장·이사회에 부여
- (改) 조합원(조합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시) 대상 총회 의안제안권 부여

- **(사전미통지 안건 의결제한) 조합원 대상으로 사전에 통지된 안건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만 예외 허용** 기획처/법개정

- * (現)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사전 통지의무 부여중이나, 의결관련 제한규정 미비
- (改) 사전 미통지 안건 의결제한 규정 명시화(필요시,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 허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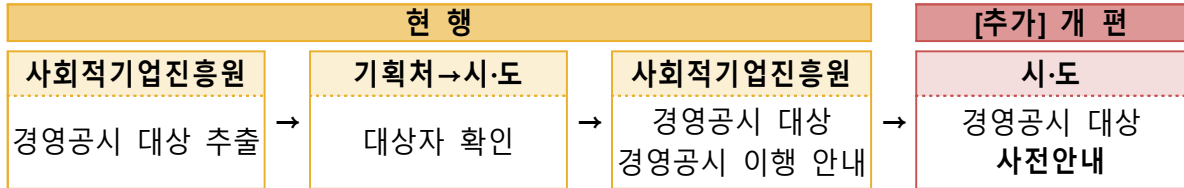
- **(가입 거부사유 통지) 조합원 가입 임의거절, 소수의 폐쇄적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거절시 사유·근거 통지 의무화** 기획처/법개정

※ (참고) 민원사례 - ○○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와 설명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민원제기 → 소관부처(농식품부)의 시정권고 조치

2 경영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

- (사전안내 강화) 시·도 협조를 통해 조합원 수, 출자금 요건에 따른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의 경우 공시안내 기획처·지방정부

* ('25) 경영공시 대상 5,362개소 중 지연공시 1,013개소(기한외 공시율 18.9%)
 <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사전안내 절차 >



※ (참고) 경영공시 제도

- (대상) 사회적협동조합·연합회, 이종연합회 + 일정규모 이상* 일반협동조합·연합회
 *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직전년도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
- (내용)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, 사업결산 보고서, 총회 및 이사회 활동 등 공시

- (변경관리 강화) 경영상황 변경에 따른 통보대상 확대 기획처·지방정부/시행령개정

* (現)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변경된 조합 → (改) 좌동 + 직전년도 출자금 30억원 이상

- (공시부담 완화) 당해연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경영공시 항목 간소화 기획처/법개정

* (예) 성장 초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당해연도 경영공시 항목에서 사업결산 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외

- (관리감독 강화) 시·도 및 소관부처 중심 연 1회 경영공시 운영 실태 점검 및 해당 조합에 사전교육 실시 권고 전부처·지방정부

- (위반제재 강화) 경영공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 및 부실·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기획처

* (現) 민간 비공개 가이드라인 → (改) 시·도, 관계부처가 활용 가능한 경영공시 관리감독 업무편람 마련 및 대외 배포(협동조합 포털 게재)

- 신고등기 지연 기간 등 행정제재 기준 명확화

4

Local : 지역사회 참여 확대

◇ 지방소멸 위기 확대 상황에서, 지역 단위 삶의 필수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주거·관광·교육, 의료·돌봄, 농어촌 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

1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

- (주거) 특화임대주택*(매입·건설형) 운영·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하여 고령자·청년·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/법개정
 - * 민간사업자매입형, 공공주택사업자건설형을 통해 특정테마에 맞는 거주공간 설계 및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
 - 사업참여 근거 상향(훈령 → 공특법), 특화형 건설임대주택 운영 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 추가(現 매입형만 가능)
 - *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既발의(’25.2.연태영 의원안, ’25.6.김우영 의원안, ’26.2.복기왕연태영 의원안)
- (친환경) 지역·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年 500개 이상 조성(5년간 2,500개) 행안부·기후부·농식품부·해수부 등
 - *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마을 내 유희부지, 농지·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·운영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, 그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
 - 햇빛소득마을 추진단* 중심으로 시설자금 용자, 공공 유희부지 활용, 지방세 감면**,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행·재정지원 추진
 - * 관계부처(행안부·농식품부·기후부·해수부 등), 지방정부, 유관기관으로 구성
 - ** 인구감소지역 내 햇빛소득마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창업 시,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(5년간, 이후 3년간 50%)하도록 개정·시행(’26.1~)
- (문화·관광) 지역 주민이 숙박, 식음, 여행,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등을 활용하여 관광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지원 문체부

< (예시) 관광두레 우수사례 >

[와우미탄 협동조합(’21) / 강원 평창]

-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평창 미탄면의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농특산물 기반 지속가능한 여행상품을 출시한 지역 여행사
-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‘ESG여행 프로그램’ 기획중, ’22년 ‘한국관광의 별’에 선정



- (교육) 학교사회적협동조합*(183개, ’26.3월)을 대상으로 학교 내 다양한 동아리, 사회연대경제 활동 경험 제공 및 우수 운영사례 공모 추진 교육부
 - * 초·중등학교를 기반으로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

< (예시)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>

[전북 고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고(高)순도순]

- (참여대상)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
- (내용) 학교가게 운영, 재학생 대상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과 사회적연대경제 체험 교육 제공



※ 완주군청 공식 블로그

- (돌봄) 협동조합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돌봄·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모델* 개발 지원 복지부

*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을 포함하여 1개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('26.4월 공모 추진)

< (예시) 지역 내 복합서비스 제공 사례 >

[전남 섬섬 프로젝트(25) / 전남 신안군]

- (참여기관)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및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사단법인 상생나무, 협동조합 더4C, 목포 YWCA희망지원센터 등 참여
- (내용)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, 심리정서, 여가생활, 위생 건강 등 4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('25년 447회)



2 시장진입·현장 규제 완화

- (빈집정비)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*로 사회적기업, 일반협동조합 외에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포함 추진(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) 국토부/법개정

* (現) 한국토지주택공사,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, 부동산투자회사, 사회적기업, 일반협동조합, 민법상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 등 → (改) (추가) 사회적협동조합

-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 추진(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) 농식품부/법제정

* (現) 시·군 직접 또는 농어촌공사·빈집소유자 → (改) (추가) 사회연대경제조직

- (농어촌 민박)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*에 사회적협동조합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검토(도농교류법 개정) 농식품부/법개정

* 현재 농어촌 민박은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제공하는 형태

- (의료)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(약 40개) 인력 확보 지원 복지부

*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-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간 매칭플랫폼 닥터링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 실시 중

- 지역 내 보건·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의료 외 분야로 부(副) 사업 확장 허용 복지부

* (예) 사업계획서상 실현가능성·타당성이 있고,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에 부합할 경우 정관변경 허용

③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육성

- (농촌) 농촌에 생활복지·주거개선·돌봄 등 다양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(협동조합 포함) 육성·지원 추진*농식품부

* 서비스 공동체 수: ('24) 33 → ('25) 40 → ('26) 66, 공동체 지원: 5년간 최대 69백만원/연

- 협동조합 대상 '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' 참여 확대 및 주민주도 서비스 협약* 지원

* 참여 사군 선정('25.11월, 당진 등 6개),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대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지원('26.2월~), 협약체결('26.下)

< 농촌 돌봄서비스 공급 우수사례 >

[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('22~) / 전북 진안군]

- 전북 진안군 백운면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기, 가스, 수도, 방충망 등 간단한 수리 서비스 제공
- (사례) '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' 참여하여 면내 33개 마을 독거노인부부 거주가구 등 50개 야간안전 센서 설치('25.9)



-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을 구상·계획하여 취약계층 대상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* 지원('26년 10개소)

* (예) 괴산군 영양도시락('25, 충북 괴산군) : 괴산군 내 생산된 지역농산물로 영양도시락을 제조해 취약계층(34가구)에 전달하는 사업으로, 3개 민간 비영리조직이 협업

- 생활SOC 시설 운영·관리에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

* (예)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('22, 경북 의성군) : '의성키움센터(보육·놀이시설)' 운영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영유아·초등학생 대상 문화·보육프로그램 등 제공

- (어촌) 어촌·도서 지역 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해안 환경관리,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서비스 공급해수부

- 취약해안 해양폐기물* 대응 시 협동조합 등과 우선계약 추진**

* 해양쓰레기 유입 취약해안 3,824km(전체 1.5만km 중)으로 전체 쓰레기의 80% 유입
** 취약해안폐기물 대응 세부시행지침 개정('26.1)

-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 중심 협동조합이 우선이 되도록 마을 소득사업 운영방안 마련*

*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지침 개정('26.下)

- ◇ 협동조합의 **설립·운영**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**법·제도**를 적극 정비하고,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**중앙-지방-현장** 간 **협력 거버넌스** 및 **운영기반 강화**

① 설립·운영상 편의 제공

- **(총회 운영방식 확대)**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,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 기획처/법개정

- **(변경신고 간소화)**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주요 사항(5개 항목)으로 축소 및 간소화 기획처/시행령개정

- * (現) 설립신고 후 신고사항 변경시 항목 및 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
(改) 소재지, 정관, 임원정보, 출자금 납입총액, 조합원 수 변경시 신고

- 다만, 출자금 납입총액 및 조합원 수 등 항목의 경우, 변경이 잦은 협동조합 특성을 고려하여 연 1회 일괄신고 허용

※ (현장 의견) 그간 변경신고 항목 및 기준이 불분명하고, 경미한 사항*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없어 현장 혼선 및 부담 초래

* 임원 주소·연락처, 법인 전자우편주소, 조합원 명부 등

- **(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완화)** 5인 이하의 조합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최소인원수(총 4인) 예외 적용 기획처/법개정

- * (現) 총회의사록에 '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' 총 4인 이상 기명날인
(改) 총회의사록에 '출석 조합원 전원'이 기명날인시 유효성 인정

※ (현장 의견) 총 조합원 5인의 경우 과반수인 3인 출석으로 총회 개최 가능하나,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최소 인원수(4인)를 충족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 존재

- **(운영공개 효율화)** 협동조합의 운영사항* 공개 방식을 종이문서 외에도 전자문서 형태의 서류 보관·제공까지 확대 기획처/법개정

* 정관, 규약, 총회·이사회 의사록, 조합원 명부, 회계장부, 기타(정관규정) 등

** (現) 종이문서(운영사항 공개서류) → (改) 종이문서 + 전자문서 포함

2 중앙-지방-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

□ (협력 거버넌스 강화) 중앙-지방-현장 간 협의채널 활성화

- (시·도 협의회 정례화) 중앙-지방 간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시도협의회 연 1회이상 의무화 기획처
- (담당자 교육) 정책집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 권역별 담당자 대상 연 1회 교육 강화 기획처

□ (데이터 공유·활용) 중앙-지방간 협동조합 데이터 연계·관리 강화

- (데이터 연계) 협동조합 정보보유 기관(국세청, 법원 등) 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 기획처·국세청·법원행정처/법개정

- * 현재 실태조사 대상 확정을 위해 사전절차(국세청 대상 정보공개청구)에 약 2개월 이상 소요
- 협동조합 관리시스템(기획처, 시·도) 개편을 통한 연계 강화 기획처·행안부

<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개편(안) >

	기획처	시·도	국세청	법원행정처	
기존	부처, 시도간 개별정보 운영	모든 협동조합 현황 관리 (협동조합 콕포털)	일반협동조합 현황 관리 (새물관리시스템)	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	법인등록번호



	기획처 + 시·도 + 국세청 + 법원행정처 + 행안부			
개편	다부처 정보제공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관련 근거 마련 ■ 각 부처 시스템 내 연계 개편 		

- (데이터 세분화) 협동조합 관련 세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관리 데이터를 업종·유형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기획처
- * 현재 협동조합 포털 내 조합명, 주소, 설립일, 업종 등 간소화된 데이터 관리
- (데이터 관리기간 설정) 각 시도·부처의 데이터 현행화 기간을 매년 4분기로 설정하여 관리 고도화(관리지침 개정) 기획처·지방정부

□ (유관기관 간 협력강화) 연합회, 당사자조직 등과 네트워크 활성화^{기획처}

- (연합회 소통 강화) 권역별 성장지원센터(소셜캠퍼스 온)를 활용하여 연합회 네트워킹 데이 개최 정례화 등 현장소통 기반 마련

※ (참고) 전국 성장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(현황) 전국 19개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운영(수도권 5, 비수도권 14 등)
- (기능)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인가 상담, 사회적가치 측정, 모니터링 등

- (현장 네트워크 강화) 전문가·당사자조직 등과 함께 협동조합 정책을 설계·평가하는 “협동조합 네트워크” 구성 및 운영^{기획처}

- 연 1회 이상 워크숍 개최 및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, 지역별 우수 사례 등 공유를 통해 모범사례 전파

3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

【 실태점검 내실화 】

- (실태조사 주기) 실태조사 시행 주기(2년)를 기본계획 수립 주기(3년)와 일치시켜 상호 연계성* 강화^{기획처/법개정}

* (現) 실태조사 실시주기 2년, 기본계획 수립주기 3년 → (改) 실태조사 실시주기 3년

- (자료요청권 신설) 기획처의 시·도, 관계부처에 대한 자료 요청권 신설* 및 요청 가능한 자료범위** 명확화^{기획처/법개정}

* (現) 관계부처 또는 시·도지사 → 기획처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의무
(改) 기획처 → 관계부처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자료 요청가능

** 상호 및 등록번호, 사업장 소재지,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·납부 관련 자료 등

【 설립·운영기반 강화 】

- (미운영 협동조합 정비) 시·도의 휴면협동조합 운영 관리를 위해 법원의 운영사실 공고 통지대상에 시·도, 기획처 포함^{법원행정처·기획처/법개정}

* (現)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대상으로 운영 사실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 및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공고사실 통지
(改)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 및 관할 시·도지사, 기획예산처장관에 공고사실 통지

□ **(회계·재무 가이드라인 마련)** 조합원 내부거래 등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처

* 공인회계사협회·세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(~'26.上)
→ 연구용역 추진(~'26.12) → 협동조합 회계·재무 가이드라인 마련('27)

※ (예시)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액 구분(매출, 비용 등), 주사업과 수익사업 구분*, 잉여금 세분화, 출자금과 영업이익 구분 등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작성
*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 이행률 40% 달성여부 명시적 확인 필요

□ **(유형별 정관 가이드라인 마련)**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·유형별 운영 모델과 정관이 결합된 가이드라인 제공 기획처

- 업종별 사업 모델 + 특화된 정관예시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협동조합 포털 내 제공

※ (예시)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 배포('21년~)
○ (사업모델) 거점시설 운영·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,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맞춤형 사업모델 수립 방법론 및 사업예시 제시
○ (특화된 정관) "갈등관리위원회" 및 "운영지원전문기관" 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, 규정·규약 예시 배포

□ **(상시상담체계 구축)** 연중 누구나 상시 상담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기획처

-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 등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
- 기초·전문 분야를 구별한 체계적 상담 및 신청방식 간소화 등 수요자를 고려한 상담 효과성 제고

	기 존	개 편				
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년 3월 ~ 12월 (※ 1~3월 미운영 : 계약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중 상시화 (※ 4분기 조기계약 추진) 				
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계·법률 등 상담전문기관 	<table border="1" style="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기초</td> <td>• 사회적기업진흥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전문</td> <td>• 회계·법률 등 전문기관</td> </tr> </table>	기초	• 사회적기업진흥원	전문	• 회계·법률 등 전문기관
기초	• 사회적기업진흥원					
전문	• 회계·법률 등 전문기관					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털에 가입한 법인(이사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가입 없이 누구나 가능 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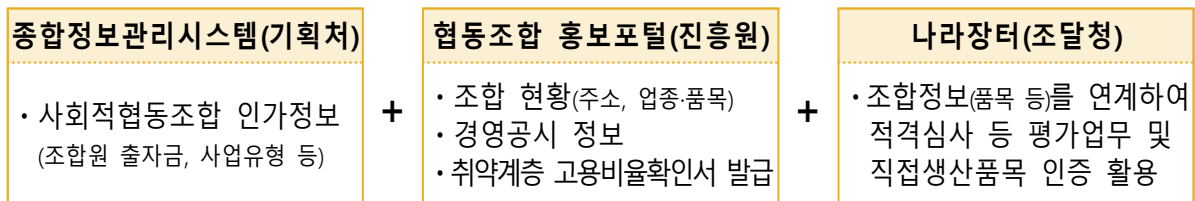
【 우수 협동조합 육성·홍보 】

- (정체성 진단) 자가진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Coop-Index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합회 등을 통한 Coop Index 참여 인센티브 검토 기획처
 - * 협동조합 7가지 원칙의 준수 여부를 점수화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
- (우수 인증)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도 마련, 인증시 민간위탁 사업 참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기획처
- (홍보) 돌봄, 의료, 교육, 주거, 에너지·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분야별 우수 협동조합 선정 및 집중 육성 기획처
 - 우수 협동조합 참여패 수여 및 관련 홍보(SNS, 보도자료 등), 연 1회 ‘베스트 협동조합’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홍보 기획처

【 판로·교육지원 강화 】

- (판로 확보)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기관별 분절된 정보를 연계하여 구매자 접근성 제고 및 우선구매 수요 발굴·매칭 지원 강화 기획처

<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(안) >



- 민간 유통채널 진입 및 온·오프라인 판촉 확대(연 5회 이상) 기획처

- (협동조합 대상 교육 강화) 기본 교육과정을 임직원·조합별, 창업 단계별로 세분화하고,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기획처

대상별			창업 단계별	
임원	리더십, 의사결정 등	+	설립 전	정관작성, 총회 개최 등
조합원 등	조합 운영, 인사노무 등		설립 후	경영원리, 마케팅, 회계 등

V. 향후 추진계획

◇ 법령 개정, 과제관리 강화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

- (추진체계)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, 시·도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, 지방정부 협력 추진 및 이행과제 점검 강화
 - (협동조합심의회) 과제 이행상황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*를 통해 주기적(연 1회)으로 점검·평가
 - * 기획처 차관 주재, 정부위원(과기부·행안부·농식품부 등)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
 - (시·도협의회) 시·도협의회('26.下)를 통해 지방정부 이행상황 점검
 - (기타 실무협의회 등) 실무협의회, 전문가 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보완
- (법령개선) 과제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('26.下)
 - *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(자기자본 30→50%),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, 조합원 대상 총회 소집요구권·의안제안권 부여 등
- (과제관리)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홍보포털(www.coop.go.kr)에 공개
 - 기타 과제 등은 지속적 발굴·개선 추진

【 현재 대비 변화되는 모습 】

구분	현장 목소리	미래 개선
재정	√ “현재는 개별 협동조합별로 교육, 판로 등 기능별 지원중이나, 설립 연령·규모 등에 따라 판로·인력·교육·컨설팅 등 맞춤형 종합 지원이 필요”	√ (지원방식) 진입·도약·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 구분 √ (지원내용) 판로·인력·교육·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
자금 조달	√ “협동조합의 자금조달 확보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30%인 우선출자 한도를 타 개별법상 협동조합 수준(50%)으로 확대 필요” √ “신협은 기본법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나, 신협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 지원 미비”	√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 (자기자본 30 → 50%) √ 신협의 협동조합 출자 허용
세제	√ “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으로 성격·특성이 유사한 여타법인(사회적기업 등)에 준하는 혜택 적용 필요”	√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 검토
규제 개선	√ “빈집정비,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으나, 관련 법제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어려움 존재”	√ 빈집정비,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
운영 효율성	√ “시·도 등에서 협동조합 운영·정비·관리하기 위해 국세청(사업자번호), 법원행정처(법인등록번호) 등에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등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 어려움” √ “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에 따라 총회 장소섭외, 조합원 참여독려 등 과도한 시간·비용이 발생”	√ 협동조합 운영·정비·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 √ 총회 운영방식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 →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

참고

세부 실행계획

세부 추진과제	추진시기	소관부처
1. Scale up : 경쟁력 강화		
① 성장·도약 지원		
▶ 성장 단계별(진입·도약·고도화) 지원 확대	'26~	기획처
▶ 창업보육센터(BI) 활용, 업무공간·장비, 경영·기술교육 지원 등	'26~	중기부
▶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장비 도입, 기술개발, 판로개척 등 지원	'26~	중기부
▶ 소진공 용자 정책자금 내 사회연대경제 전용트랙 신설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저리대출 지원	'26~	중기부
▶ 지역신보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속 지원	'26~	중기부
▶ 경영위기 협동조합 기준 마련 및 대상선정·관리·점검·모니터링 지원	'26~	기획처
② 자금조달 확대		
▶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(자기자본 30 → 50%)	'26.下	기획처
▶ 신협외 협동조합 등 타 법인 출자 허용(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마련)	'26.下	금융위
③ 사회적협동조합 활력 제고		
▶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 검토	'26.下	행안부
▶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액 기준에 대해 탄력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	'26~	행안부
2. Mutual : 상호간 협력·연대 강화		
① 연합회 기능 강화		
▶ 연합회 관계자 입회시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제도 운영·도입	시범~'27	기획처
▶ 연합회 회원조합 총회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제시 (정관 예시 및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배포)	'26.下	기획처
▶ 연합회 중심으로 신규 협동조합 육성, 교육·관리 기능 강화	'26~	기획처
▶ 연합회 공제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가이드라인 마련	'26~	기획처
▶ 공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제회 설립 검토	'26~	기획처
② 거점실행조직 기능 강화		
▶ 업종·지역별 거점실행조직 선정 및 중앙·지방 사업 공동기획·수행	'26~	기획처
③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·연대 강화		
▶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,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법 제정	'26.上	행안부
▶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협의체 및 민간 자문단 운영 등	'26.上	행안부
▶ 중앙·지방·현장 간 협력하여 지역현안 공동과제 지원	'26.5~	기획처
▶ 새마을금고,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·이차보전 등 지원	'26~	금융위·행안부
▶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, 정책금융기관 보증공급 등 지원 확대	'26~	금융위

세부 추진과제	추진시기	소관부처
3. ①identity : 정체성 강화		
①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민주성 제고		
▶ 조합원에 총회 의안제안권 부여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조합원·감사에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조합원 대상 사전 미통지 안건 의결 제한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조합원 가입 거절시 사유·근거 통지 의무화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② 경영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		
▶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 공시 안내 강화	'26.下	기획처·지방정부
▶ 경영상황 변경 통보대상 확대(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)	'26.下	기획처·지방정부
▶ 당해연도 설립인가 조합 경영공시 부담 완화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연 1회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 및 사전교육 실시 권고	'26.下	전부처·지방정부
▶ 경영공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	'26.下	기획처
4. ②local : 지역사회 참여 확대		
①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강화		
▶ 특화임대주택 운영·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 및 고령자·청년·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(공공주택특별법 개정)	'26.下	국토부
▶ 햇빛소득마을 연 500개 이상 조성 및 시설자금 융자, 공공 유희부지 활용, 지방세 감면 등 행·재정지원 추진	'26~	행안부·기후부 농식품부·해수부 등
▶ 지역 주민이 숙박, 식음, 여행 등 관광 사업체 운영지원	'26~	문체부
▶ 학교사회적협동조합 대상 학교 내 동아리 활동 등 경험 제공 및 우수사례 공모	'26~	교육부
▶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	'26.上	복지부
② 시장진입·현장 규제 완화		
▶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추진(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)	'27.上	국토부
▶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 추진(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)	'26.下	농식품부
▶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추진(도농교류법 개정)	'26.下	농식품부
▶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인력 매칭 플랫폼에 의료사협 가입 지원	'27.1~	복지부
▶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부(副)사업 기준 교육 등 지원	'26.下	복지부
③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육성		
▶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 확대 및 주민주도 서비스 협약 추진	'26.下	농식품부
▶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 구상·계획하여 취약계층 대상 지역 먹거리 프로그램 지원('26년 10개소)	'26~	농식품부
▶ 생활 SOC 시설 운영·관리에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	'26~	농식품부
▶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대응시 협동조합 등과 우선계약 추진 (취약해안폐기물 대응 세부시행지침 개정)	'26.1~	해수부
▶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마을 소득사업 운영방안 마련 (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지침 개정)	'26.下	해수부

세부 추진과제	추진시기	소관부처
5. Efficiency : 운영 효율성 제고		
① 설립·운영상 편의 제공		
▶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총회 운영방식 허용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협동조합 및 연합회 변경신고 간소화(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최소인원수(총 4인) 예외 적용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협동조합 운영사항 공개 방식을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형태의 서류 보관·제공까지 확대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② 중앙-지방-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		
▶ 시·도협의회 연 1회 이상 의무화	'26.下	기획처
▶ 시·도, 시·군·구 권역별 담당자 대상 연 1회 교육 강화	'26.下	기획처
▶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강화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 및 시스템 개편	'27.下	기획처 국세청·행안부 법원행정처
▶ 데이터를 업종·유형별 등으로 세분화 관리	'26.下	기획처
▶ 시도·부처 데이터 현행화 기간(매년 4분기) 설정·관리(협동조합업무지침 개정)	'26.下	기획처·지방정부
▶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활용 연합회 네트워킹 데이 개최 정례화	'26~	기획처
▶ 전문가·당사자조직 등 현장 네트워크 강화	'26.下	기획처
③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		
▶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주기 연계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시·도, 관계부처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및 요청 가능한 자료범위 명확화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기획처
▶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를 위해 법원의 운영사실 공고 통지대상에 시·도, 기획처 포함(협동조합기본법 개정)	'26.下	법원행정처· 기획처
▶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회계·재무 가이드라인 마련	~'27	기획처
▶ 업종·유형별 정관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	~'27	기획처
▶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 등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	'26~	기획처
▶ 연합회 회원조합 Coop-Index 참여 인센티브 제공 검토	~'27	기획처
▶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도 마련 및 인센티브 지원 검토	'26.下	기획처
▶ 돌봄, 의료, 교육, 주거, 에너지·환경 등 5대 분야 우수조합 선정·육성	'26.7~	기획처
▶ 연 1회 베스트 협동조합 선정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	'26.7~	기획처
▶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분산된 정보 연계	'26.下	기획처
▶ 민간 유통채널 진입 및 온·오프라인 판촉 확대	'27~	기획처
▶ 협동조합 대상별,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	'27~	기획처